



참된 배움과
소통으로 참 꿈을
키우는 행복드림
부송교육

부송교육통신

2024. 3.

이리부송초 2024- 9 호
발 행: 이리부송초등학교

제 목: 2024학년도 이리부송초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

1. 출결 상황 관리

가. 결석 : 학칙에 의거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

1) 출석인정 결석 - 5일 이내에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

- 가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나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(현장실습),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학교장이 승인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등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다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 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- 라) 기타 부득이한 사유(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)
- 마)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- **결석사유서 제출**

【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】

구 분	대 상	일 수	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◦ 형제, 자매, 부, 모	1	사 망	◦ 부모 및 조부모, 외조부모	5
입 양	◦ 학생 본인	20		◦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, 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	3
				◦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			◦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	

※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2) 질병 결석 -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

- 가)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나)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3) 미인정 결석

- 가)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·도피 등)
- 나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다)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, 10일을 초과한 가족체험학습 기간,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, 개인적인 해외어학연수

4) 기타 결석 - 결석사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,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

- 가)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나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다)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만 기타 결석으로 인정

나. 지각, 조퇴, 결과

- 1) 지각: **등교시각(9:00)**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2) 조퇴: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
- 3)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4)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무단, 기타로 처리함
- 5)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

다. 학년 수료

- 1)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**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**으로 함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의 관리로 처리함
- 3) 위의 2)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

2. 교외체험학습

-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**연 15일 이내(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)**
-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 단계시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.
(※24년도부터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)
 - 교외체험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고 5일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 학생이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,건강 여부 확인(단, 해외 체험학습 시 현지 통신 사정고려)

< 운영절차 >

교외체험학습 신청(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경계' 단계의 경우 전일 까지)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(서면 또는 문자)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→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

※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)

※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

-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- ② 그 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
※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(미인정 결석 처리)

-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(사설학원 주관 해외어학연수기간)
-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
※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

- ①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
-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
-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
- ④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※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하이클래스 학교알리미방에 관련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

※ 하이클래스 학교양식신청 탭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.

2024. 3.

이 리 부 송 초 등 학 교 장